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98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김영호 · 장경태 · 권칠승
윤종균 · 박홍근 · 이병진
김준형 · 강경숙 · 백승아
박수현 · 맹성규 · 정을호
백선희 · 박홍배 · 박주민
박성준 · 김태년 · 조정식
이주희 · 전용기 · 박상혁
김준혁 · 박지원 · 김주영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

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하여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를 각각 “조사·평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정에 따른 <u>조사</u>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u>조사</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조사 · 평가</u>----- -----<u>조사 · 평가</u>----- ----- -----.
---	---